H E

용역경비계약서

(주)청송안전시스템

용역경비계약서



도급인(갑)

소 邓: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상 호: (株)아이피에

CH II OI AH: 代表理事 李 鎔 漢

수급인(을)

소 재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21-11

상 호: (주)청송안전시스템

대표이사 : 김 미

위"갑""을" 당사자간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구역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하고 "갑"은"을"에게 용역경비료를 지급할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한 경비대상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

"을"은 "갑"이 제공하는 용역경비의 대상물건은 평택시 지제동 33번 지 (주)아이피에스 건물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경비인원)

- 1.경비인원은 2명으로하고 "을" 의책임하에 1일 1조1교대(1일24시간근 무)로 운영하며"갑" 을" 상호협의하에 경비원을 증감 할 수 있다.
- 2.경비원의 결원시는 "을"이 대행근무를 하기로 한다.
- 3.경비원은 공장주변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경비료)

- 1.용역경비료는 월₩1,7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2.용역경비료는 경비원의 급료,상여금,퇴직금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위험부담금,기업이윤등을 포함한다.

VEN VEN

제5조(계약기간)

- 1.용역경비계약 기간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2002 년 8 월31 일까지 1 년으로 한다
- 2.본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하 여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해약 통고가 없는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다만,계약금은 "갑" 을" 협의하에 인상조정한다.

제6조(계약해지)

-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이 파산선거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때
 - 나.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때
 - 다. "을"이 용역경비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때
 - 라. 경비원 근무와 관련된 이 계약서조항을 수시 위반할 때

제7조(용역경비료의 청구 및 지급)

"을"은 용역경비료를 매월 1일부터 월말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금액에 이의가 없는한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용역경비료를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2장 용역경비업자의 의무

제8조(규정 등의 준수)

"을"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 1. "갑"은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조직 및 근무 편성,경비요령,경비원의 교체등 경비업무에 대하여 "을"과 협의 조정 할수 있다.
- 2. "을"은 "갑"의 관리권 행사 범위내에서 대상시설의 경비업무를 성실 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3. "을"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갑"과 충분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10조(기밀의 보존)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일체 제 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양도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 급 할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수 없다.

제3장 경비업무실시

제12조(경비원 채용등)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경비업법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자를 선발하여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방호의 의무)

1."을"은"갑"이 정하는 경비대상 시설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화재,혼잡,무단침입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진다.

제14조(경비근무)

- 1."을"은 고용경비원으로 하여금"갑"이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케하며 일일경비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보고서를"갑"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2."을"은 경비근무중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중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갑" 에게 통보한다.
- 3."을"은 업무수행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고하며"갑"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의 경비에 대 하여는 사전에 "을"에게 관리방법과 사고억제를 위한 주의사항등을 서면통보함과 동시 "을"과 충분히 협의한다.

제15조(운용,감독)

"을"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갑"과 상호협의하여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6조(경비원의 통제)

- 1."을"은"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비위사실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을"의 징계절차 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이탈,근무시간중 음주,수면,비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갑"의 지시사항을 태만이 하는 행위로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경비원의 고용책임) "을"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3.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 4. 경비원 임면에 관한 책임
 - 5. "갑"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제18조(상호협력) "갑"과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상호협력 한다.

제19조(경비 계획서의 작성)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 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경비 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정지) "을"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 적인 경우 또는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업무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 하고 사유 소멸 시까지 업무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기간 동안에는 "갑"에 대한 의무를 지지아니한다.

제 4장 손해배상



- 제 21조(손해배상) 1. "을"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경비원이 업무수행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경비대상 시설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 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하여 한국경비협회장이 확인한 그 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22조(을의 면책)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갑"의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해
 - 2. "을"의 경비원이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 3. 기타 "갑"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규약을 위약 하여 발생한 손해

제 5장 경비원의 후생복지

- 제23조(장비, 시설 지원) 1. "갑"은 "을"에게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집기,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동계 난방시설,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갑"이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경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株)아이페에스

代表理事 李 鎔 漢

"을"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21-11

(주)청송안전시스템

김 미